

사회과학연구소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한다)라 부른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연구소의 목적) 본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 제학문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동을 통하여 주요 국내외 사회과학문제를 이론적·실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연구소의사업)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적 연구
2. 학술강연회, 연구발표회
3. 연구논문집 발간
4. 국내외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류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6조(구성)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, 연구위원,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.

제7조(자격 및 임명) ①연구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으로 한다

②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 한다,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시 본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5-1-33~2제 5편 부설연구기관

③연구원은 대학원 재학생 이상으로, 연구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④간사는 학사 이상으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임기) 본 연구소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직무)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

②연구위원은 연구소장과의 협의하여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을 수행한다.

③연구원은 연구위원의 사업수행을 보조한다.

④간사는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연구분과) 본 연구소 내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구성)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연구소장, 사회과학대학장, 사회과학대학의 각 학과장으로 구성되며, 연구소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2조(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3조(권한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소운영의 기본계획
2. 연구소장 추천
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규정의 제정 및 개정
5. 기타 연구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4조(의결)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4 장 재 정

제15조(경비 및 연구비)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교비 지원금, 사업수입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본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용역수주는 연구비 간접비의 10%를 연구소 운영비로 추렴한다.

제16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